#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 案 /66

提出年月日: '92. 9. 21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 非現實的인 上水道料金을 漸進的으로 現實化하여 公企業經營의 財政合理化로 建全財政을 圖謀하고 上水道 使用의 基本 및 段階別 使用量을 全國的인 統一 調整 施策에 副應하며.
- 類似業種을 統合調整하여 明確한 業種 區分으로 需用家의 混亂을 防止하고 賦課의 公正性을 期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가. 料金引上은 (第26條) 科金 中 別表 2의 業種別 料金表 改正으로
  - (1) '91 決算에 依한 水道使用 供給價의 平均 7% 引上 調整하고
  - (2) 業種別로 引上率 差等 調整하였으며, 그 內容은
    - (가) 上水道 使用料收入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家庭用은 平均 7% 引上 調整 未滿인 6.7% 調整하고. 다만 庶民層에서 使用하는 共同水道는 使用量에 대하여 累進料金을 適用치 않고 m'當 基本料金을 適用하여 負擔을 輕減하였음.
    - (나) 營業用 또는 奢侈業所는 7%以上 引上 調整하였는 바,
      - 1) 營業 1種(大部分 製造業體와 多衆 人員의 利用業所)은 8% 引上하고,
      - 2) 營業 2種(大衆人員의 食品生活과 車輛 聯關 業體 等)은 7.4%로 引 上 하였으며,

- 3) 沐浴 1種(大衆沐浴湯 等)은 9.4% 引上하고.
- 4) 沐浴 2種(特殊沐浴湯業所)은 8.8%로 引上 調整하였으며 이는 沐浴 1種보다 現行 基本料金의 料率이 100% 많게 策定되었기 때문이며,
- 5) 公共用은 3.3% 引上하고,
- 6) 專用工業用은 9.8% 引上 調整하였는 바, 이는 現行 基本料金의 料率이 一般的 製造用水인 營業 1種보다 242% 적기 때문임.
- 나. 業種調整(第 27 條 : 業種의 區分) 중 "別表 3" 業種別 區分表 改正 現行 10個의 業種으로 細分된 業種區分을 業種이나 使用料 賦課基準이類似한 家庭 1種과 2種은 家庭用으로, 營業 1種과 2種은 營業 1種으로, 營業 3種과 臨時用은 營業 2種으로 各各 統廢合하여 7個 業種으로 縮小 調整하였음.

# 3. 參 考 事 項

- 가. 關聯 法令: 別添 參照
- 나. 上水道料金 調整 事前 協議 完了
  - (1) 經濟企劃院長官斗 上水道科金 調整 協議 畢: '92. 5. 6
  - (2) '92 上水道料金 調整 및 料率體系 改善指針 示達 ('92, 6, 23 內務部長官)
    - 料金調整 內容은 全國 平均 5% 範圍內 引上 調整하되 自治團體別 最高 9% 限度로 差等 調整하게 되었으며, 大田直轄市는 上水道料金 赤字 要 因이 25%以內이기 때문에 平均 7%에서 料金을 引上 調整함.
- 다. '91 決算結果 및 '92引上調整 總括 7% 引上, 1,342,864千원 增收 豫想

	生産	價	供給	價	赤字	額	引上
區 分	糖類	m' 🖀	總額	m' 😩	總額	m' <b>a</b>	要因考
191決算結果	千 원 23,398,036	<u>શ</u> 273.04	千 원 18,882,343	શ 220.34	千 원 4,515,693	<u>શ</u> 52.70	23.91
74引上調整後	,	,,	20,225,208	236.01	3,172,828	37.03	15.69

### 라. 92年度 上水道使用料 引上要因 他市道 比較

<b>S</b> :	}		市	道別	仁川	委 川	大 邱	光州	大 田
平均	供	給	價	(m²含)	<del>શ</del> 248.59	શ 266.94	શ 226.74	<del>શ</del> 275.27	원 220.34
平均	生	産	價	(㎡當)	253.31	350.24	270.48	330.65	273.04
平均	赤	字	額	(前當)	4.72	83.30	43.74	55.38	52.70
'92 <b>j</b>	質	31	上	要 因	1.90%	31.20\$	19.30%	20.12	23.91%

마. '92 上水道料金 調整 및 料率體系 改善 指針 示達 (內務部 '92. 6. 23)

### 바. 自治團體別 調整率

0引上要因別 調整率 및 該當團體

<b>屋</b> 分	調整別	地方公企業 適用團體數
引上要因別	平均 5%	76個 團體
5% 未滿	동결	6 (인천,부천,광명,안산,명주,속초)
5%以上 ~ 10%未滿	1 . 5%	7 (원주, 청주,이리,포항,경주,을산, 제주)
10%以上 ~ 15%未滿	3 <b>%</b>	3 (수원,서산,안동)
15%以上 ~ 25%未滿	5%	13 (서울,부산,대구,성남,안양,천안,전주, 구미,영주,경산시,창원,삼천포,양산)
25%以上 ~ 35%未滿	7%	11 (광주,대전,평택,춘천,충주,온양,대천, 군산,목포,김천,영천)
35%以上 ~ 50%未滿	9 <b>%</b>	10 (오산,강룡,삼척,공주,순천,여수,경산군, 마산,진주,서귀포)
50%以上~ 100%未滿	ii.	16 (의정부,송탄,동두천,과천,구리,남양주, 파주,동해,논산,예산,남원,여천,점촌, 총무,김해,밀양)
100%以上	,,,,,,,,,,,,,,,,,,,,,,,,,,,,,,,,,,,,,,,	10 (미금, 평택, 화성, 정선, 재건, 정주, 나주, 동광양, 상주, 진해)

※ 地方公企業을 適用하지 않는 團體(125개)에서도 위의 基準을 따라 調整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 전 직 할 시 상 수 도 급 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 26조중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을 "별표2의 업종별 요금 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한다.
- 제 27조중 제1항 중 "별표 제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를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 표에" 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2 )

업 종 별 요 금 표 개정( 1985. 9.26 조례 제1459호 ) 개정( 1991. 1.31 조례 제2093호 )

	구분 기		기 본 요 금		요 글	
업종		사용량(톤)	요 금(원)	<b>삭용량 (톤)</b>	요 금(원)	비고
,	<b>†</b>			11 - 30	170	. 초곽요금란의
č		0 - 10	1,200	31 - 50	210	금액은메초과 톤당 요금임
8	}			51이상	250	
				21 - 50	330	
9				51 - 100	380	
	1 ₹	0 - 20	5,600	101- 300	4 30	2
업	1	*		301이상	480	
8				31 - 50	530	
	2 🕏	0 - 30	12,900	51 - 100	640	
				101이상	740	×
		v		501 - 700	320	8
목	1 8	0-500	140,000	701 - 1,000	350	
욕				1,001이상	380	
	8			201 - 500	650	
탕	2 ₹	0-200	110,000	501-1,000	760 _	"
				1,001이상	880	
3	<del>3</del> 8	0- 30	6,900	31익상	380	
3	업 용	0-2,000	160,000	2,001이상	120	"

(별표 3)

# 업 종 구 분 표

구분	업종별	구 본 내 용
1.개정		0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기사용 급수, 단,공용급수전에 대학에는 기본 요율을 적용 0 담배,인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대업 및 복덕방,인장업 행정서사업,수에점,단확가게,구멍가게 등으로써,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0 고약원,영약원, 양노원, 탁약소,노인회관, 경노당
2.영압	1 番	0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0 사설 소화전
	2 書	0 식품집대업 0 공연장 0 숙박업 ( 여인숙 제의 ) 0 유기장(보령장,골프장,키바례,당구장,기원,전작오락실,무도장,로라스케이트장 및 스케어트장 ) 노래당 0 백약정,도대센탁,대규모 소대점 0 작동차 정박업, 주차장, 세차장,주유소( 산소 및 까스류 포함 ), 운송 또는 관광업 0 예식장 0 사실학원 0 사진현상소 0 양조업 0 의약품,확공약품, 확장품 제조업 0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 탁구장 제의 ) 0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건축에가를 받아 시공증인 건물: 업주전까지 ,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 0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0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 0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업태
3.목욕	1 ₹	0 일반 목욕장업 ( 공동탕,가족탕, 한중막 )
	2 ₹	0 특수 목욕장업 (싸우나탕, 터케탕, 복합목욕탕) 0 실질적으로 특수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4. 전	용당당동	0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학이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5. 3	38	0 관공사, 병영 0 학교 0 국가 또는 지방작시단체가 50%이상을 출작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 제조용수 제의) 0 종교단체, 병송국,신문사,정당, 국가유공단체,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 에 관한 법률" 에 의학에 등록된 공의단체) 새다울금고, 농합,수합 축업, 원업의 중앙의 및 지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The state of the s
헌 행	개 정 안
제26조 (요금)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울표에 의한 종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업종의구분) ① 요울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 은 별표 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요금)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업종열 사용량에 대한 요금
e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별표 2 및 별표 3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현	81	
( 별료2 )	3 4	2 2 2	( 별목2 )
7	. 계정(1985. 9	.26 포벡 제1459호)	2
	계정(1991.1	.31 토백 제2093호 )	
	7 6 8 9	± 7 2 3	74 4

		7 8	8 9	± 구	8 5	9 2
7	E	사용당(E)	요 글 (원)	사용당 (E)	요 공(원)	۹ 2
7	1 #	0 - 10	700	1198	120	
				11 - 30	160	1
정	2 #	0 - 10	1,100	31 - 50	200	
8				51억상	230	
				21 - 50	270	
	1.5	0 - 20	4,800	51 - 100	340	
엉			*	101의상	400 -	
0	-	<del>                                     </del>		21 - 50	330	
엉	, ,	0 - 20	5,600	51 - 100	380	
•	2 8			101억상	460	
8				31 - 50	490	
	3 8	0 - 30	12,000	51 - 100	550	
	1			101억상	670	
9	4 8	0 - 30	20,000	31위상	100	
	T			401-500	300	
목 .	1 8	0 - 400	100,000	501-1,000	310	
8	-		e .	1,001억상	330	
7				401 - 500	620	
짱	2 3	0 - 400	200,000	501 - 1,000	720	
				1,001억상	820	
3	3 8	0 - 30	6,000	31역상	370	
3	9 B	0 -5,000	140,000	2,001의상	110	

입 용 별 요 공 표

정

\*

계정( 1985, 9.26 로써 제1459호 ) 계정( 1991, 1.31 로써 제2093호 )

/	7£	7 8	8 9	. 1 7	요 글	4 2
9 8	1	사용방(돈)	요 공(원)	사용량 (E)	요 금(원)	7 -
7				11 - 30	170	. 효과 요금반요
	ģ	0 - 10	1,200	31 - 50	210	금액은데3과 문당 요금임
	8			51 약상	250	
				21 - 50	330	
			*	51 - 100	380	
9	1 8	0 - 20	5,600	101- 300	4 30	
양				301억상	480	
8				31 - 50	530	
8	2 8	0 - 30	12,900	51 - 100	640	
				101억상	740	
-				501-700	350 .	
9	1 8	0-500	140,000	701-1,000	350	] '
4		4		1,001억살	380	
				201 - 500	650	1
랑	2 8	0-200	110,000	501-1,000	760	1
				1,001억상	880	
3	3 8	0- 30	6,900	31이상	380	
3	g g	0-2,000	160,000	2,001역상	120	

(第14回
] - 本會議
第3次
别添)
23

( 별표	3)	업 총 구 분 표	, ( )	₫표 3 )	) '업 종 구 분 표
78	엄종별	구 본 내 용	구분	엉푱벌	구 분 내 용
1. 가장	1 番	O 공설 및 사설 공동수도(지방자치단체가 5세대여상 가사용에 급수 하는 것 ) O 노연희관,경노당,양로원,고아원 기탁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1.가정	가정용	O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위한 가사용 급수, 단,공용급수 대하여는 기본 요음을 적용 O 당네,연판,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대업 및 복덕병
	2 🛔	O 주면 주거용 급수 ( 확여소 포함 ) O 단일업소로 담배하게,복덕방,만확하게,쌀하게(장곡상포함) 연란하게,관광안내소,문방구,지물포,철물정,대서소(일반향정), 3명역만 구멍하게 몇 개박 유식업소			행정시사업,수에접,만확가게,구멍가게 등으로써, 10㎡ 소규모 가게 이 고아된,영아된, 양노된, 탁아소,노인회관, 경노당
2.영업	1 3	O 양조,재분,제당,양각 및 작물가공,제방,기계,전기 전자제품 제조 주물 및 제출,제자,제과,고무제품제조,성유공업,제약(학공약용포함) 식료제품 및 가공(빙과류 제품,식육,억육,냉동,통조림,병조림, 연조버터,조덕식품) 영색 및 표백요업,한의원	2.99	1 表	0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로 또는 판매하기나 서비스를 영소 총 확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O 기탁 다른 급수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			0 사설 호확전
	2 -	O 공연장, 단과점, 정목절, 금융압소(보양의사, 신용급고, 식종은행, 에급 취급소) 의원, <u>가</u> 축병원, 유기오락장(보링장, 골프장, 카카페, 당구장, 기원, 전작오락실, 무도장, 로락스케이트장 및 스케이트장) 백화점, 사장(종합상가, 연쇄상가) 이 의용업, 예상장, 세탁업, 연쇄소			
		및 출판사, 온송 및 관광업소, 창고 및 보관업, 주착장(화물주차 장, 용달주착장 포함) 학원, 사실강습소, 사진관, 차광정비업, 세작장, 강사장, 급은방, 제재소, 유제소,주유소(산소 및 까스류 포함) 역인속, 하속, 유계실, 병원			

		e 9			,	게 정 안
7 8	9 49	구 본 내 용		7 E	연종별	⊋ € H 8
		0 용식정(간여용식정 포함) 다방, 호텔, 이관(일반목욕장의 공동방과 속박시설을 강한 업소용 일반목욕장의 공동방에 보호개방기를 설치하 있을 경우 일반목욕장의 공동방 사용요금에 한하여는 목욕1종을 작용 안다) 갈라현상소, 두부 및 당면제조	2	. 99	2 *	○ 식품집대업, ○ 공연장 ○ 속박입 ( 여연속 제의 ) ○ 유기장(보령장,골프장,개박에,당구장,기원,천작오확실,무도장,로막스케이트장 ) 노래함 ○ 백화점,도에번막,대규모 소대경 ○ 작동작 정박입, 주작장, 색작장,주유소( 산소 및 작스위 모함 ),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약장 ○ 작성화원 ○ 작진연상소 ○ 양소업 ○ 여약용,화공약용, 화장용 제조업 ○ 생유시설업 ( 체유도장, 탁구장 제의 ) ○ 단계 급수를 무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건축이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영주전까지 ,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울작용 )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신학용 급수 ○ 수도관 약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울) ○ 기타지방작시단체장의점학논업터
3. 목욕	1 5	0 대중요당 시설만 있는 목욕당 0 용장 및 수영장 ( 비명리용 제의 ) 0 한중막 ( 호텔네 한중막 제의 )	3	. 목 욕	1 書	0 일반 목욕장업 ( 공동당, 가족당, 안중약 )
	2 8	0 대용량 어역의 유량(독방 시설보유 열호) 허개당, 가평바우나당 ( 호텔에 한용당 )				0 실찰적으로 특수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4. 전용	328	0 원수를 별도 설직한 액수콘에 의학이 공수하는 것	4	. ऌ€	3 2 2 8	0 별도의 백.급수군에 의학에 금입용으로 공급되는 것
5. 7		0 국가 및 저방작시단에 0 학교, 병원 (국·공립) 0 교의,사찰,방속국,신문사,국당 기업체,사회단체,정당,운행(시중은행제의) 0 전용전에 위한 철도용 0 농업,수업,원제업등포함 등, 특별법에 위하여 설립된 포함	5	5. <b>∂</b>	3 8	0 관광서, 병영 0 학교 0 국가 또는 지방작시단제가 50%이상을 출작,출연한 병인 및 단체 (생산 제조용수 제외) 0 종교단체, 방송국,신문사,정당, 국가유공단체,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 에 관한 병률"에 의학에 등록된 공약단체) 세탁운공고, 등업,수업
6. g	~ B	이 단계 교수를 목적으로 당시 가상한 교수 시상에 대한 교수 이 건축에가를 독약고 시공증인 건물용, 약단, 업주전까지에 한함 이 판매용 교수 ( 개본으로 제외 ) 이 손실보상 ( 개본으로 제외 )				수영, 원업의 중앙의 및 저사무소, 기탁 사회복지시설

#### ●物價安定以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條 (公共料金등의 決定) ①法律에 의하거나 事實상 國家가 獨占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專賣價格 및 事業料金(이하 '公共料金'이라 한다)을 決定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主務部長官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價格이나 기타의 料金(手數料를 포함한다)을 決定·承認· 認可 또는 許可할 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영위하는 事業으로서 大統 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料金을 決定할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공공요금등) ①법 제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매가격 및 사업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철도요금
- 2. 전기요금
- 3. 제조담배(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특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 가격
- 4. 우편요금·전신요금 및 전화요금(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전기통신 요금을 제외 한다)
- ②법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상하수도사용료
- 2. 공업용수사용료
- 3. 도시가스요금
- 4. 지하철운임
- 5. 시립병원 · 도립병원 등의 의료수가
- 6. 제1호 내지 제 5호 이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